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사후평가위원회의 민간위원을
별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 》

■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654호)

2026. 4.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목 차

I .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제2215654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 검토의견	2
가. 사후평가위원회의 민간위원을 별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 (안 제84조제3호의2 신설)	2

I.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제2215654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윤준병의원 등 14인

나. 발 의 일 : 2025. 12. 29.

다. 회 부 일 : 2025. 12. 30.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심의위원회, 지방심의위원회 또는 특별심의위원회 등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의제규정을 두고 있음.

이와 관련, 사후평가위원회는 대규모 건설공사의 내용 및 효과에 대하여 발주청이 작성한 사후평가서의 적절성에 대하여 심의하고 있으며, 사후평가는 이후 건설공사의 소요기간 및 비용 등을 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는 바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후평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도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사후평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도 공무원 의제 규정을 신설하여 사후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4조제3호의2 신설).

3. 검토의견

가. 사후평가위원회의 민간위원을 별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 (안 제84조제3호의2 신설)

개정안은 사후평가위원회의 민간위원을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84조(별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 3. (생략) <u><신설></u> 4. 5. (생략)	제84조(별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 ----- -----. 1. ~ 3. (현행과 같음) <u>3의2. 제52조에 따른 사후평가위원회</u> <u>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u> 4. 5.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52조 및 현행법 시행령 제86조¹⁾에 따르면, 발주청은 대통령령

1) 「건설기술 진흥법」

제52조(건설공사의 사후평가) ① 발주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공사 내용 및 효과를 조사·분석하여 사후평가를 하고 사후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후평가서의 적절성에 대한 발주청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발주청에 사후평가위원회를 둔다.

③ 발주청은 사후평가위원회에 자문하여 의견을 받은 결과 그 내용이 타당하면 사후평가서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발주청은 사후평가서를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의 방법과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청의 사후평가서가 유사한 건설공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사후평가의 내용·방법, 사후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총공사비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공사의 내용 및 효과를 조사·분석하여 사후평가를 하고 사후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사후평가서의 적절성에 대한 발주청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발주청에 사후평가위원회를 두어야 함.

구체적으로 발주청은 사후평가서 작성 시 ①예상 공사비 및 공사기간과 실제로 투입된 공사비 및 공사기간의 비교·분석, ②공사 기획 시 예측한 수요 및 기대효과와 공사 완료 후의 실제 수요 및 공사효과의 비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6조(건설공사의 사후평가)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총공사비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특성상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사후평가서(이하 “사후평가서”라 한다)의 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② 발주청은 사후평가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용역평가 및 시공평가와 제78조제1항에 따른 준공보고서를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분석하여야 한다. 다만, 총공사비가 5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1. 예상 공사비 및 공사기간과 실제로 투입된 공사비 및 공사기간의 비교·분석
2. 공사 기획 시 예측한 수요 및 기대효과와 공사 완료 후의 실제 수요 및 공사효과의 비교·분석

3. 해당 공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 주민의 호응도 및 사용자의 만족도

5. 그 밖에 발주청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사후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발주청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중앙심의위원회, 지방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또는 다른 발주청의 사후평가위원회 위원

2.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해당 분야의 전문가

④ 사후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항에 따른 조사·분석의 결과에 관한 사항

2. 제2항에 따른 조사·분석에 필요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후평가서의 적절성에 관하여 발주청이 요청하는 사항

⑤ 제3항과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후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이 정한다.

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종 및 규모 등에 따른 사후평가의 시점,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사후평가서를 축적·분석하여 건설공사의 시행과정별로 표준적인 소요기간 및 비용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분석, ③해당 공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④주민의 호응도 및 사용자의 만족도 등에 관한 조사·분석을 하여야 하고,

사후평가위원회는 해당 조사·분석의 결과와 조사·분석에 필요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발주청은 사후평가위원회에 자문하여 의견을 받은 결과 그 내용이 타당하면 사후평가서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건설공사 사후평가의 활용과 관련해서는,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13조 및 제14조²⁾에서 사후평가위원회의 심의

2)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13조(사후평가서 결과 입력 및 공개) ① 발주청은 사후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한 "사후평가서(별지 제7호 및 제8호서식 포함)"를 규칙 제46조에 따라 사후평가시스템에 입력 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입력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사후평가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14조(사후평가결과 활용)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사후평가시스템에 접속하여 유사한 공사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유사한 공사가 있는 경우 발주청은 영 제68조제1항제7호에 따라 기본구상 마련에 사후평가결과보고서의 관련내용을 참고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건설공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제9조제3항의 사후평가서를 축적·분석하는 등 사후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건설공사의 소요기간 및 비용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관리기관에게 발주청의 사후평가 결과 및 활용실적을 분석하도록 하여 건설공사의 목적물별·시행과정별 표준적인 소요기간과 투자비용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국방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건설공사의 입찰방법을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8항에 따라 발주청에서 제출한 일괄입찰등 집행 추진성과 평가표와 사후평가위원회 심의결과를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에게 사전에 배포하여 입찰방법을 심의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관리기관에게 건설공사의 사후평가에 대한 평가항목, 측정방법, 수행절차 및 결과활용 등에 대한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시설물 유형에 맞게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하여 사후평가 내용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결과가 반영된 사후평가서를 사후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①유사한 건설공사 기본구상 마련 시 참고·반영하며, ②사후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건설공사 소요기간 및 비용의 기준을 정할 수 있고, ③건설공사 목적물별·시행과정별 표준 소요기간 및 투자비용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④건설공사 입찰방법 심의 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에게 배포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사후평가는 선행 공공건설공사의 내용 및 효과 등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추후 시행되는 유사한 공공건설공사의 비용·기간 산정과 선행 공사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의 개선 등을 위한 중요한 절차에 해당하며,

사후평가제도가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발주청이 작성한 사후평가서의 적절성을 자문하는 사후평가위원회의 심의 또한 공정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한편, 현행법 제84조³⁾에 따라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적용 시

조치할 수 있다.

3) 「건설기술 진흥법」

제84조(별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중앙심의위원회, 지방심의위원회 또는 특별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의2. 제20조의6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자에게 소속되어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3.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민간위원을 공무원으로 간주하는 위원회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⁴⁾, 기술자문위원회⁵⁾
건설사고조사위원회⁶⁾가 있는데,

동 위원회들과 사후평가위원회는 해당 위원회의 위원을 중앙건설기술
심의위원회 ·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는 등 위원 구성에 있어 유사한 측면이 있음.

4. 제68조에 따른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5. 제8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위탁한 협회, 기관 또는 단체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4)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건설기술심의위원회) ① 건설기술의 진흥·개발·활용 등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방건설
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군사시설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
방부에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특별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③ 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며, 특별심의위원회를 두는 경우 그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5)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기술자문위원회) ①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발주청의 자문에
응답하기 위하여 발주청에 기술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발주청이 정한다.

6) 「건설기술 진흥법」

제68조(건설사고조사위원회) ①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은 중대건설
현장사고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
영할 수 있다.

【 사후평가위원회와 타 위원회의 설치기관, 기능, 위원 구성 비교】

구분	사후평가위원회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기술자문위원회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중앙심의위원회	지방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설치기관	발주청	국토교통부	시·도	국방부	발주청	국토교통부, 발주청, 인·허가기관
기능	사후평가서의 적절성에 대한 자문	건설기술의 진흥·개발·활용 등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	건설기술의 진흥·개발·활용 등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	국방·군사시설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 사항을 심의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자문	
위원 구성		1. 건설기술 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상당) 이상 공무원		1. 국방부의 5급(상당) 이상 공무원		1. 건설공사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2. 영관급 장교		
	1. 중앙심의위원회, 지방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또는 다른 발주청의 사후평가위원회 위원		1. 중앙심의위원회, 다른 시·도의 지방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1. 중앙심의위원회, 지방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또는 다른 발주청의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2. 건설기술 관계 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직원				2. 건설공사 업무와 관련된 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임직원
	2.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해당 분야의 전문가	3. 건설기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해당 분야의 전문가	3. 건설기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해당 분야의 전문가	3. 건설공사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안은 건설공사 사후평가 제도 운영에 있어 사후평가위원회 심의의 중요성과 타 위원회 민간위원의 공무원 의제 규정들을 고려하여, 사후평가위원회의 민간위원도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적용 시

공무원으로 간주하도록 함으로써, 사후평가위원회 민간위원의 업무 수행에 책임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건설공사 사후평가 제도가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타당한 입법취지로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사후평가 심의의 공정성·신뢰성 제고를 위해 사후평가위원회 민간위원을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대상에 포함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하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91